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활성화 조례안

(이희원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391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2월 03일

발 의 자: 이희원 의원(1명)

찬 성 자: 곽향기, 김규남, 김영철,
김재진, 김태수, 김혜영,
남창진, 도문열, 민병주,
박 석, 서상열, 신복자,
이봉준, 이상욱, 이성배,
이종태, 이종환, 정지웅,
최민규, 홍국표 의원(20
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청, 기초자치단체, 유관기관, 지역대학, 산업체, 직업계고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서울의 역점 산업 유형에 적합한 인재를 육성하고 취업을 지원함으로써 서울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교육감 등의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나.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의 기본계획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다.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활성화 사업 내용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라.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청, 기초자치단체(구청), 유관기관, 지역대학, 산업체, 직업계고 간 컨소시엄 구축을 통해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 창업, 선취업후진학, 지역정주를 지원함으로써 서울 지역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관기관”이란 정부 및 서울특별시의 재정 지원을 받아 지역 산업의 한 분야를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지역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에 따른 학교 중 서울특별시, 경기, 인천에 소재하는 학교를 말한다.
3. “직업계고등학교”란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
 -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4. “협약형특성화고”란 교육부 공모사업을 통해 협약형특성화고로 선정된

특성화고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및 협약형특성화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서울특별시청 및 협약형특성화고 소재의 기초자치단체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및 협약형특성화고에 참여하는 학교장은 지역 산업 유형에 맞추어 직업계고 분야를 확대하고, 산업체, 지역대학과 참여 기업의 발굴 및 지역사회의 참여 확대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의 기본 방향
2.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협약형특성화고 사업에 참여하는 학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활성화 사업) 교육감은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매년 실시한다.

1. 자문, 협의 등을 위한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협력위원회’ 개설
2. 사업 운영을 위한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지원센터’의 운영
3.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취업, 창업, 선취업후진학, 지역정주를 지원하는 사업
4.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활동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사업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청, 기초자치단체(구청), 유관기관, 지역대학, 산업체, 직업계고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활성화 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활성화 조례안은 안 제5조(활성화 사업)등에 따른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운영 비용이 발생하지만 서울시교육청 관련부서(평생진로교육국 진로직업교육과) 예산문서 등을 확인결과 기시행사업¹⁾으로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 병 준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계분석관	손 제 승

☎ 02-2180-7953
e-mail : smclt22@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

1) 2025년 서울시교육청 <서울직업교육혁신지구> : 750,000천원
○ 서울직업교육혁신지구 기반구축 : 375,000천원
○ 서울직업교육혁신지구 기반구축(서울시전입금) : 375,000천원
※자료 : 2025 서울시교육청 예산 사업별 설명자료, p.1304